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민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2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3일

발 의 자: 이민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
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
이효원, 황철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원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, 관련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-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은 900여 개에 이르며, 이용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, 작은도서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·장서·프로그램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함(안 제28조제1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, 장서확충 및 독서·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작은도서관의 진흥) <신 설> (생 략)	제28조(작은도서관의 진흥) ① 시 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인력지원, 장서확충 및 독서·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28조(작은도서관의 진흥)에 작은도서관 인력지원, 장서확충 및 독서·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시장의 노력의무¹⁾를 신설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는 기추진 사업²⁾이므로 별도의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-
- 1) [해당 조문 검토 필요성] 노력의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(Ex. “~노력하여야 한다” 등)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 다른 조항과 결합하여 비용발생의 소지가 있어 재정 수반 요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
- 2) [기추진사업] 공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자료구입비 지원과 운영비, 작은도서관 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지원
- 서울시 서울도서관 2025년 <작은도서관 조성 지원(전환사업)> : 588,000천원
 - 서울시 서울도서관 2025년 <작은도서관 육성 지원> : 787,000천원